

2022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202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에 지정된 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년도 제2차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기간 만큼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 지원	: 1~50인까지, 1년단위	2년까지(3년이내)
❖ 사업개발비 지원	: 연간 5천만원 이내	2년까지(3년이내)
❖ 전문인력 지원	: 1명, 월 200~250만원 한도	2년까지(3년이내)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①~⑥)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7년부터 적용). 부처형 포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불가
- ❖ 신청기업의 대표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①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법인·단체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 업무지침 준용)
 -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 괜찮은 일자리 기준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
 -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다)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
 -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정관 관련 세부 요건

-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 제외)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 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 관련 세부 요건

-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22.4.1. 공고) : 지정신청 기업이 '22.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2.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22.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⑥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교육 이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22.1.1. 신설)”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에 한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인정함

4

주요 심사내용

-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조직형태 심사사항 >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사회적목적 실현 심사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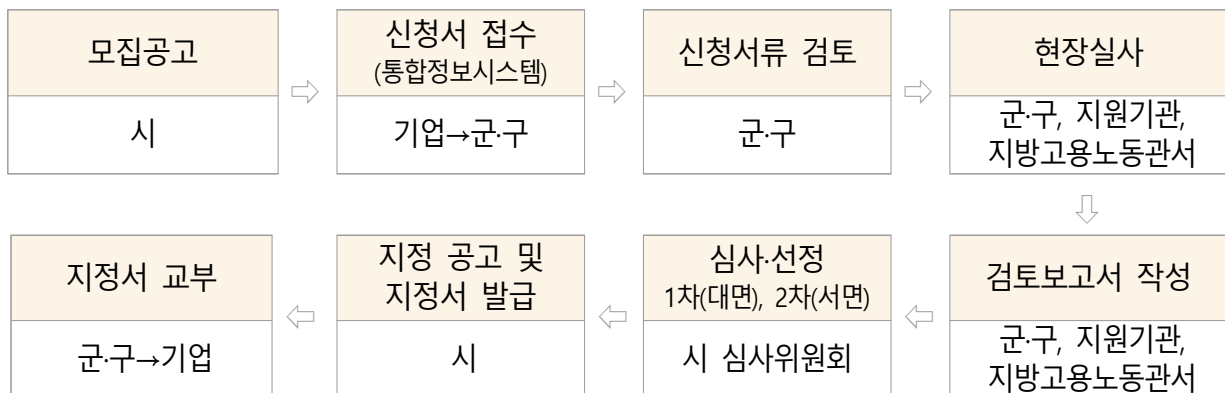
-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향후 지속적 사회적가치 실현 및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여부 등
- ※ 이밖에 지정요건, 심사기준과 관련한 사항은 「202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름

5

지정절차

○ 지정절차



- 결과통보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소재지 관할구청에 통보

6

접수기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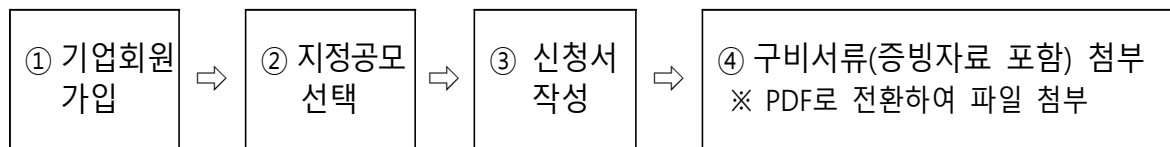
- 접수기간 : **2022. 8. 1.(월) 09:00 ~ 8. 17.(수) 18:00**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군·구청(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 신청기업은 반드시 군·구 담당자와 신청서류 확인 등에 대한 상담 후 신청·접수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는 PDF 파일 전환 후 업로드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처리

○ 시스템 등록 절차



※ 신청방법 및 시스템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1661-4006)

7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2. 8. 4.(목) 15:00~17:00
- 장 소 : JST 제물포스마트타운 대강의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 참석대상 :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희망기업
- 주요내용 : 지정요건 및 재정지원 등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전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접수 방법 등
- 문 의 :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032-446-9492

8

신청서류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서식 1】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서식 2】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법인 등에 한함),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지점이 있는 경우) 등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제출
4.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적이 있는 경우)
 - *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실확인서 【서식 3-1~3-5】 및 구비서류

5.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 기업만) 【서식 4】

- *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및 급여 계좌이체 내역
-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 시),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㉔’ 경우)

6.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 가결산 재무제표 등은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이 확인을 받아 입증 가능한 회계자료일 것

7. 공증받은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 정관·규약은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공문 제출 가능
-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기존실적이 있는 기업만) 【서식 5】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서식 6】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7】

11.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각 1부

-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e-런닝’메뉴에서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
-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12. 대표자 이력서 【서식 8】

1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 기업만)

☞ 신청서류중 ①4대 보험 가입자 명부, ②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③유급근로자 명부, ④사업자등록증, ⑤재무제표, ⑥교육 수료증 등은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 미제출시 불이익 :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가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 참여기업은 반드시 온라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으로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마감일까지 완료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릅니다.

11

문 의 처

- (총괄)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73
- (상담 및 컨설팅) 인천권역 지원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더 좋은 경제 사회적협동조합	032-446-9492	032-421-9585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 6층

- (접수) 군·구 담당부서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중 구	일자리경제과	032-760-6953	032-760-6986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동 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177	032-770-6399	동구 염전로 40번길 70(송림동)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032-880-7910	032-880-4871	미추홀구 독정리로 87(송의동)
연 수 구	일자리정책과	032-749-8482	032-749-8459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남 동 구	일자리정책과	032-453-2492	032-453-5778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부 평 구	일자리창출과	032-509-7422	032-509-7696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계 양 구	일자리정책과	032-450-6775	032-551-5746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서 구	공동체협치과	032-560-0905	032-560-2731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강 화 군	경제교통과	032-930-3353	032-930-3639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용 진 군	경제교통과	032-899-2512	032-899-2519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 신청접수 및 지정상담은 권역별 지원기관, 관할 군·구에 문의

참고 1 취업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카. 청소년 쉼터에 입·퇴소한 자(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소년)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참고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 ① 가구 월평균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2,657,716	4,187,663	6,194,182	7,112,173	7,218,243
60%	1,594,629	2,512,597	3,716,509	4,267,303	4,330,945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 위계 ·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 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청년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 확인방법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 요청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
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결과 취득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 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 자매 중 근로 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 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카.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신설>

-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등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소년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 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 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가'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참고 3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 서비스, 예술 · 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1860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P8550 일반 교습 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 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 예술 · 관광 및 운 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0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0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등 사업 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개 인 서비스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S969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 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육아도우미 등	T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내 고용활동 T9700 가구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신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참고 4

고용조정 여부 판단

대분류	중분류	세 분 류	고용 조정 여부
2. 회 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 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x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그룹내 계약사간, 자회사간 전직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⑪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x
		①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 권유로 인해 이직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x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능력 미달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